

유럽지역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Europe Region)

1979 년 12 월 21 일 파리에서 채택

유럽지역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Europe Region)

유럽지역 국가들과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유네스코 총회가 유럽의 협력에 관한 결의안들에서 몇 차례에 걸쳐 주목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헌장에 규정된 원칙들에 따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국가들간의 협력의 발전과 증진이 평화와 국제이해 증진에 필수적 인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언어의 다양성과 경제, 사회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화들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를 *자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녕과 항구적인 번영을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희망하면서*,

헬싱키에 모인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 (1975년 8월 1일)에서 "상 호수용 가능한 조건아래, 참여 국가들의 학생, 교사, 학자들간의 교육, 문화, 과학 기관들에 대한 접근기회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간의 협정이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들간의 직접적인 약정들을 통해 향상하고," 또한 "학위와 졸업증서들의 비교 및 등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를 증진함으로써"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상기하고*,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증진하고자 대부분의 체약국들은 졸업증서의 등가성이나 인정에 관해 그들간에 이미 양자간 또는 소지역 차원의 협정들을 체결하여 왔 음을 *상기하고*,

그러나 양자간, 소지역 차원의 그들의 노력을 추구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협력을 전 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희망하며, 유럽지역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할, 예외적으로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을 이룬다고 *확신하고*,

각 체약국 주민들의 다른 체약국들의 교육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더욱 더 특히 이들 국가들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이 풍요로운 문화유산으로부터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 수학 단계로의 입학 허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수학 인정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 개념은 사회적, 국제적 이동성의 맥락에서, 관계 당국이 인정하는 한, 개인이 취득한 졸업증서 및 학위와 다른 관련 자격들이 입증하는, 지식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도달한 교육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체약국들이 그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이동과 사상, 지식, 과학적, 기술적 경험의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외국 학생들의 학력 또는 졸업증서의 인정이 그들에게 자국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의 바탕 위에 외국 학생들을 고등교육 기관들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을 *고려하며*,

이러한 인정이 다음의 사항에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며*,

1. 그들의 영토 내의 기존 교육수단이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교사, 학생,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
3. 외국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이들이 귀국 시 접하는 어려움들을 완화하는 것.

평생교육의 증진, 교육의 민주화, 구조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각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교육정책의 채택과 적용 등의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수학,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가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국가적, 양자간, 소지역, 다자간 차원의 기구들에 의해 취해질 조화된 역동적 조치를 위한 출발점이 될 협약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장래 협력을 지지하고 조직할 것을 *다짐하며*,

유네스코 총회가 설정한 궁극적 목적이 '모든 국가들의 고등교육연구기관에서 발급된 학위, 졸업증서, 수학증서의 인정 및 타당성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비하는 데' 있음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정의

제 1 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외국의 고등교육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이라 함은, 체약국의 관할 기관이 이를 유효한 증서로 수용함과, 그 소지자에게 외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국의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 소지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부여함을 뜻한다. 인정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상급 수준에서의 학문연구를 수행하거나 추구하기 위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의 인정은 그 소지자로 하여금, 마치 그가 관련 체약국에서 발급된 유사 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인 것처럼 어느 체약국에서나 고등교육 연구기관의 입학에 대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정은 그 외국의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동 인정을 부여하는 국가의 고등교육연구기관의 입학에 필요할 수도 있는 조건들 (졸업증서의 소지 와 관련된 조건들 이외의) 에 따를 것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

(나) 직업의 수행을 위한 외국의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소지자의 관련 직업의 종사를 위한 직업적 준비의 인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 당사 국에서 발효중인 법적, 직업적 규정이나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은 그 외국의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관련 정부 또는 직업관련 당국이 제시하는 관련 직업의 종사를 위한 기타 조건들에 따를 것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

(다) 그러나,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그 소지자가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가 수여된 국가에서 향유하게 되는 것보다 다른 체약국에서 그 소지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2. 본 협약의 적용상, '부분수학'이라 함은 완전한 과정을 이루지는 아니하나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상당한 보탬을 주는 정도의 수학 또는 훈련기간을 뜻한다.

II. 목적

제 2 조

1. 체약국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평화와 국제이해를 위한 모든 유럽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그들의 교육적, 기술적, 과학적 잠재력의 보다 나은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유네스코 회원국들과의 더욱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체약국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존의 정부간 협정들의 틀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법률 및 헌법상의 조직의 틀 안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굳은 결의를 엄숙히 선언한다:

(가) 체약국들의 이해를 위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교육제공 정책과 행정 절차와 일관되게, 활용 가능한 교육연구 자원의 최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1) 고등교육기관을 모든 체약국들의 학생 또는 연구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2) 그러한 사람들의 수학,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를 인정하고;

(3) 비슷한 용어 및 평가 기준을 다듬고 채택하여, 학점, 수학과목 및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4)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로 증명되는 기 취득한 지식과, 관할 기관이 수용할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다른 관련 자격들을 유념하면서 상급 수학단 계로의 입학허가 문제들에 대해 역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5) 달성된 교육 수준과 배운 교과목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지식의 학제간 성격에 유념하면서, 부분 수학에 대한 신축성 있는 평가기준을 채택하고;

(6) 수학,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의 인정에 관한 정보교류 체제를 개선한다;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및 각 국가의 정책과, 또한 교육의 질 향상, 평생교육의 진흥 및 교육의 민주화에 관한 유네스코의 관련 기관들이 마련한 권고들에 제시된 목표들에 기초할 뿐 아니라, 완전한 인격의 개발과 국가들 간의 이해, 관용, 우호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의 인권규약들과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 협약에 의한 교육에 대한 인 권들에 관한

모든 목적들에 기초하여, 체약국들의 교과과정 및 계획방법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고등교육을 진흥한다

(다) 수학 및 학위의 인정뿐만 아니라 ... "학위와 졸업증서들간의 비교 및 등가
성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세계적 협력을 증진한다

3. 체약국들은 권한 있는 관련 기관들이 본 조에 규정된 목표들을 진보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국내적, 양자간, 다자간 차원에서, 특히 양자간, 소지역적, 지역적
또는 기타 협정들과 대학들 또는 다른 고등교육기관들간의 합의조치 및 권한 있는
국가 또는 국제 기구 및 기타 기구들과의 약정을 통해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동의한다.

III. 즉각적인 적용을 위한 임무

제 3 조

1. 체약국들은, 정부들의 의무사항들에 더하여, 관할 당국이, 제 1 조 1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 증서 및 학위 소지자들이 각 체약국 영내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수학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체약국에서 발급한 중등학교 졸업 증서 및 다른 졸업증서들을 인정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2. 그러나 제 1 조 제 1 항 가의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는 한, 특정 고등교육기관에의
입학 허가는 해당 학문을 유익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지식과 관련된 자질
및 수용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제 4 조

1. 체약국들은, 정부들의 의무사항들에 더하여, 권한 있는 관련 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동의한다:

(가) 제 1 조 1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 증서 및 학위 소지자들이 자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고등학문 및 훈련을 받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를 인정하고;

(나) 학문탐구를 위해, 다른 체약국들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취득한 부분
수학의 인정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가능한 한 규정한다.

2. 위 제 3 조 2 항의 규정들은 본 조의 규정이 해당되는 경우들에 적용된다.

제 5 조

체약국들은, 정부들의 의무사항들에 더하여, 제 1 조 1 항 나에 규정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들의 권한 있는 관련 기관들이 발급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를 인정하도록 관련 기관들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동의한다.

제 6 조

어느 한 체약국의 영토 안에 있는 교육기관들에의 입학 허가가 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체약국은 동 협약 원문을 해당 기관들에 보내고 후자가 동 협약 II, III 에 규정된 원칙들을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 7 조

1. 인정이라 함은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취득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관련 기관들이 승인한 기관들에서 수행한 학업 및 취득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에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학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나 정치적,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제 3, 4, 5 조의 규정들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다.

2. 제 3, 4, 5 조에 규정된 것과 상응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비 체약국 영토내에서 취득한 체약국 국민은 그의 수학증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가 그의 모국 및 그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조건하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이용할 수 있다.

IV. 이행 기구

제 8 조

체약국들은 제 2 조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며 상기 제 3, 4, 5, 6 조에서 밝힌 임무가 다음의 기구들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가) 국가 기관;

(나) 제 10 조에 규정된 지역위원회;

(다) 양자간 또는 소지역 기구;

제 9 조

1. 체약국들은 본 협약에서 규정한 목적의 달성과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국가 당국들, 특히 대학, 비준기구, 기타 교육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본 협약의 적용에 수반되는 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모든 해당 분야가 관계를 맺게 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적합한 국가 기구에 위임하기로 동의한다. 체약국들은 나아가 이들 국가 기구들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한다.

2. 체약국들은 다른 체약국들의 권한 있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는 특히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학위와 관계된 활동을 함에 있어 유용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이 기관들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각 국가 기구는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학위와 관계된 활동을 함에 있어 유용한 모든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급히 다른 국가문헌정보센터로부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 재량의 수단을 가진다.

제 10 조

1. 체약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위임된다.

2. 본 협약의 채택을 위임받은 외교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유럽지역의 비 체약국들은 지역위원회 회의들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역위원회는 이 협약의 적용을 진흥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위원회는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체약국들이 이룬 성과와 직면한 문제들에 관해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와 또한 본 협약에 관해 사무국이 수행한 연구들을 접수하고 검토해야 한다. 체약국들은 최소한 2년에 한번 씩 이 지역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지역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본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 또는 개별적 성격의 권고를 체약국 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1. 지역위원회는 각 회기의 의장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한 2 년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지 3 개월 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2.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의 훈령과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의제를 준비한다. 위원회는 국가 기구들이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V. 문서화

제 12 조

1. 체약국들은 고등교육 수학,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에 관한 정보 및 문서 교환에 참여한다.

2. 체약국들은 고등교육 수학,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 인정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의 수집, 처리, 분류, 배포 방법과 기구의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때 국가적, 지역적, 소지역적, 국제 기구들, 특히 유네스코가 수집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 및 기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VI.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 13 조

지역위원회는 이 협약의 최대한 완전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노력을 권한 있는 국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들과 연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유럽지역에 속한 국가들에서의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소지역 차원의 협약 또는 협정들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간 기관들에 적용된다.

VII. 체약국의 통제를 받으나 그 영토밖에

위치하는 고등교육기관들

제 14 조

이 협약의 규정들은, 어느 한 체약국의 통제를 받는 고등교육 기관이 비록 그 국가 영토밖에 소재하는 경우라도, 동 기관에서 수행한 학업 및 취득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에 적용된다. 다만, 이 기관이 소재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관계기관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적용된다.

VIII. 비준, 가입, 발효

제 15 조

이 협약은 교황청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채택을 위임받은 외교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유럽지역 국가들의 서명 및 비준을 위해 공개된다.

제 16 조

1. 유엔회원국,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들이나 국가들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 이러한 취지의 모든 요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동 사무총장은 이러한 요청을 본 조 3 항에 언급된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최소한 3 개월 전에 체약국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체약국들의 2/3 다수결로 결정된다.
4. 이 절차는 제 15 조에 언급된 국가들 가운데 최소한 20 개 국가들이 본 협약을 비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 17 조

본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18 조

본 협약은 다섯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지 한 달 후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기타 각 국가에 대해 그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한 달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9 조

1. 체약국들은 이 협약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2. 협약의 폐기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기탁함으로써 표명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가 접수된 지 12 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본 협약의 폐기를 통고하는 국가의 영토 안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수혜자들은 그들이 시작한 학업 과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0 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체약국 및 제 15, 16 조에 언급된 기타 국가들과 유엔에게 제 17 조에 언급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와 본 협약 제 19 조가 명시하는 폐기 모두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제 21 조

유엔헌장 제 102 조에 따라, 본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유엔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 대표들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9 년 12 월 21 일,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파리에서 작성되었고, 동 4 개 원문은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 정본으로서, 각 1 부는 유네스코 문서기록소에 기탁된다. 인증본은 제 15, 16 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유엔으로 송부된다.